

의안번호	2202241
의 퇴 인	송기헌 의원
회 답 일	2024. 8. 6.
추계번호	24B2313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의4 (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 해성 조사) 신설	환경부장관은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(이하 이 조에서 “장기방치 건축물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유해 성 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함(제1항) 유해성 조사의 실시 시기, 조사 방법·범위 등 조사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5조의4 (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 해성 조사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해성 조사(안 제45조의4 신설)

-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
조치법」 제4조¹⁾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

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(이하 이 조에서 “장기방치 건축물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유해성 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

-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가장 최근 실태조사는 2022년에 실시되었고, 그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²⁾ 286곳 중 중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227곳으로 전체 공사중단 건축물 중 79%를 차지함

[표 1]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기간별 현황(2022년 실태조사)

(단위: 개, %)

구분	5년이하	5년~10년	10년~15년	15년 초과	합계
현장	28	31	58	169	286
비중	10	11	20	59	100

자료: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(2022.12.), 국토교통부

-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 실시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유해성 조사의 실시 시기, 조사 방법·범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조사 항목, 조사 방법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1)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(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
2.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
3.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·간접적 원인
4.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2) 조사 대상 건축물은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임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개요³⁾

- (실시 근거)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
- (조사 대상)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것
- (조사 내용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아래의 내용 조사
 -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
 -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
 -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·간접적 원인
 -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
 -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·시설 등의 현황
 -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
 -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
 -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
 -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

□ 2차 실태조사 결과

- (조사 기관) 대행기관-LH, 현장조사-건축구조기술사회
- (소요 기간) 현장조사-`19.05~`19.09 (약5개월)
- (소요 예산) ₩300,700,000원_VAT 포함

<공사중단 건축물 2차 실태조사 지역별 현황>

전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322	15	9	3	11	9	10	6	1	41	46	31	44	15	15	26	19	21

3)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

□ 3차 실태조사 결과

- (조사 기관) 대행기관-한국부동산원, 현장조사-건축구조기술사회
- (소요 기간) 현장조사-`22.05~`22.09 (약5개월)
- (소요 예산) ₩261,200,000원_VAT 포함

<공사중단 건축물 3차 실태조사 지역별 현황>

전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286	12	12	3	11	5	9	6	0	34	41	27	33	16	11	23	21	22